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70호 2010. 11. 26. (금)

공 고	
--------	--

- 공고 제2010-8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2

【 안 내 문 】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 행정정보 → 일림마당 → 북구 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문화홍보과 (☎ 219-7207 행정 72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8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 |
|---------|---|
| 제1조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제2조 | 용어에 대한 정의 |
| 제3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
| 제4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규모(예산) 확정 |
| 제5조 | 친환경무상급식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
| 제6조 | 식재료 공급확인 및 보조금의 정산 |
| 제7·8·9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 제10조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제11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13·14조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 제15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6·17조 배송자의 의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제18조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 부칙제1·2조 시행일을 공포일로 하고, 이전 규칙은 폐지함
- 부칙제3조 경과조치 부분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농수산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과 친환경무상급식 담당(전화 052-219-7680, FAX 052-219-76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조례규칙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